

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제출일 : 2002. 10.

제출자 : 목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시·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분야 수수료(증지대)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
-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모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위함

2. 주요골자

가. 진료비 등(안 제2조)

- 진료비,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“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”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.

나. 증명발급(안 제3조)

-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
다.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(안 제4조)

- 각종 증명발급
- 치석제거, 복합레진 치료 등 “건강보험요양기준”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
- 유료접종

라. 수수료 감면(안 제5조)

-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
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
 -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
 -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
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문대비표 : 해당없음(전면개정)

5. 관계법령

- 지역보건법 제9조

6. 관련부서 의견 : 해당없음

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결과

- 기 간 : 2002. 8. 5. ~ 8. 24(20일간)
- 결 과 : 이견없음

9. 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

10. 기타 참고사항

- ○ ○시(군)보건기관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참조

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목포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료비 등) ①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.

②진료비,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“건강보

험 요양급여기준”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.

제3조(증명발급)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,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제4조(수수료) ①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각종 증명발급
2. 치석제거, 복합레진 치료등 “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”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
3. 유료접종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.

제5조(수수료 감면) ①공익상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③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.

제6조(납부)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[별표 1]

수수료(제4조 관련)

구 분	기 준	수 수 료(원)
1.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, 운전면허 적성검사	1통	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
2.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	"	1,000
3. 1통 초과 발급		1,000
4. 치석제거	1회	30,000
5. 복합레진	1치아당	30,000
6. 유료예방접종	1회	약품의 구입가로 한다.

[별표 2]

수수료 감면(제5조 관련)

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	감면비율(%)			비고
	치석 제거	복합 레진	제증명	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	50	50		
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			100	
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			100	
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50	50	100	